



# 東草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속초시 의회의원 1인과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속초시 의회의원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속초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